

수질오염정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,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(제28조제2항 관련)

1. 조류정보

구분	대상 항목	발령 대상	발령 주체
가. 상수원 구간	남조류	법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조사·측정하는 하천·호소 중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·호소	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
나. 친수활동 구간	세포수, 조류독소	법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조사·측정하는 하천·호소 중 수영, 수상스키, 낚시 등 친수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·호소	

비고: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류정보 발령 대상 외에도 조류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·호소를 관찰지점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2. 수질오염감시정보

대상 항목	발령 대상	발령 주체
수소이온농도, 용존산소, 총질소, 총인, 전기전도도, 총유기탄소량, 휘발성유기화합물, 페놀, 중금속(구리, 납, 아연, 카드뮴 등), 클로로필-a, 생물감시	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중 실시간으로 수질오염도가 측정되는 하천·호소	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